

제 호					
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				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보훈보상대상자 와의 관계		
	성명		생년월일 (성별)	()	
	주소			전화번호	
용도		채용시험 가점	가점비율	%	
제출처					
위 사람은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지 방 보 훈 청 장 보 훈 지 청 장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					
※ 유의사항 1.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 2. 취업 사실을 통보할 때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http://job.mpva.go.kr)에서 제공하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5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					
우	주소		전화	팩스	
담당부서명:	과장:	주무:	담당자:	전자우편주소:	